

■ 시흥목감 A2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주택] 특별공급 물량배정

블록	타입	발코니 유형	공급 호수	일반 공급	%	전체 특별공급 (A+B)	%	특별공급 (B)																													
								이주대책 대상자 (A)	계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35조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노부모부양	계	1순위 사업지구 철거민	2순위				3순위	4순위									
										소계	경기도	그외 수도권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일군 위안부	한부모 가족		지자체 철거민	소계	군인(제대 군인포함)	중소기업 근로자	우수선수	공무원	의사상자	남북 피해자	다문화 가족	대한체육 유공자
(전량)	70%	10%	50%	50%	15%	20%	10%	5%	10%	(전량)	50%	80%	50%	40%	10%	20%			30%	20%	20%	20%	10%	10%	10%	10%	10%	10%									
합 계			590	182	30.8%	408	69.2%	0	408	58	29	29	88	118	59	29	56	1	28	22	11	9	2	2	2	2	17	10	2	2	1	1	1	1	1	1	
A2	59A	확장	253	78	30.8%	175	69.2%	0	175	26	13	13	38	50	25	13	23	1	13	10	5	4	1	1	1	1	7	2	1	1	0	0	0	0	0	0	
	59B	확장	219	67	30.6%	152	69.4%	0	152	22	11	11	33	44	22	11	20	0	11	8	4	3	1	1	1	1	7	2	1	1	0	0	0	0	0	0	0
	59C	확장	69	22	31.9%	47	68.1%	0	47	6	3	3	10	14	7	3	7	0	2	2	1	1	0	0	0	0	2	3	0	0	0	1	0	1	0	1	0
	59D	확장	49	15	30.6%	34	69.4%	0	34	4	2	2	7	10	5	2	6	0	2	2	1	1	0	0	0	0	1	3	0	0	1	0	1	0	1	0	1

\*군인:59A형

\*제대군인:59B형

※ 특별공급 물량 배정

- 특별공급 세부배정 내역

구분	배정비율	배정기준	비고
① 다자녀가구	건설량의 10% 범위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부고시 제2015-1074호(2015.12.29) 제3조, 제5조	
② 신혼부부	건설량의 15% 범위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부훈령 제638호(2015.12.29) 제3조	
③ 생애최초	건설량의 20% 범위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부고시 제2015-1075호(2015.12.29) 제3조	
④ 국가유공자	건설량의 10% 범위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5조	공임이 아닌 경우 5%
⑤ 노부모부양	건설량의 5% 범위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부고시 제2015-1074호(2015.12.29) 제3조, 제5조	
⑥ 기관추천	건설량의 10% 범위내 (단, 자·도지사의 승인시 10% 초과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LH 「공공(5년·10년)분양주택 특별공급 배정기준」 [판매보상기획처-3014(2015.07.02)] LH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비율 개정 통보(수도권)」 [주택공급처-378호(2010.02.17)] 사업지구철거민(제37조 이주대책대상자 포함) 대상없음 [인천광역시흥보상부-782(2016.03.18)]	

- 기관추천 세부배정 내역

순위	대상자	배정기준		비고
1순위	- 사업지구 철거민 - 철거세입자	전량배정		
2순위	-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일군위안부(임대) - 한부모가족(임대)	1순위 배정후 잔여호수 50% 이내	장애인 80% 우선 배정	장애인 : 경기50%, 서울40%, 인천10%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배분비율 없음
3순위	- 지자체철거민 - 철거세입자(임대)	1순위 배정후 잔여호수 30% 이내		
4순위	- 군인(제대군인 포함) - 중소기업근로자 - 우수기능인 - 우수선수 - 공무원 - 의사상자 - 남북피해자 - 다문화가족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1순위 배정후 잔여호수 20% 이내	20% 20% 10% 10% 10% 10% 10%	